

경영협회의 의장에 대한 반론권 인정여부
함부르크 고등법원 1982 년 2 월 10 일 결정
3 W 12/82

함부르크 주 언론법 제 11 조;
경영체부칙법 제 26 조 3 항, 제 42 조 1 항.
민사소송법 제 50 조

(판결요지)

- 1 . 경영협회(Betriebsrat)의 의장 및 경영체총회(Betriebsversammlung)의 의장은, 경영체총회의 경과에 관련되고 자기 자신의 행동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에 의해서, 함부르크 주 언론법 제 11 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경영협회는 당사자 능력이 없고, 따라서 가처분의 방법에 의하여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실개요)

본건 반론권 사건의 신청인은 경영협회 (제 1 신청인) 및 경영협회의 의장(제 2 신청인)이다. 위 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이 진행시킨 경영체총회의 경과에 관한 기사의 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항고를 제기하였다.

(판결이유)

허가된 항고는 이유가 없다. 지방법원은 1962 년 1 월 13 일자 함부르크 주 언론법 제 11 조에 기한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 하였는 바, 이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신청인들의 신청은, 반론권에 관한 제 3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에 인용된 출판물의 의사표시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제 2 신청인인 경영협회의 의장 H. M 씨가 출판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이미 그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서 자기자신의 이익범위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침해되고 또한 공표된 사실에 관해서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자만이 함부르크주 언론법 제 11 조의 의미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되는 것이다.(함부르크 고등법원 ArchPR 77/47 참조)

그러나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론권에 관한 제 3 호 내지 제 5 호에 규정된 출판물의 의사표시에 대한 제 2 신청인의 개인적인 관계가 결여되어있는 것이다. 제 2 신청인은 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경영협회의

법정대리인(경영체규칙법 제 26 조 3 항 참조)으로서 및 경영체총회의 의장(경영체규칙법 제 42 조 제 1 항 참조)으로서도, 그 자신의 지위나 이해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위 기사에 있어서는 HDW 회장인 N. H 씨의 출현, 요구 및

약속에 관련해서 전체로서의 경영체총회나 또는 그 개개의 구성원들의 반응이나 의견의 묘사만이 문제로 되었던 것이다. 이 경우에 경영체총회의 경과가 올바르게 묘사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 2 신청인이 경영협의회의 의장으로서 이해관계를 가질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 보도에서 묘사된 경영체총회 내지는 개개의 노동자전원의 반응이나 의견에 대하여는 어떠한 개인적인 관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 제 2 청인에 대하여는 반론권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독자들이 위 기사를 편견없이 읽고 나면, 위 경영체총회의 구성원들이 벌인 찬성 및 반대의 시위가 위 제 2 신청인의 책임에 돌아갈 것이 아님을 능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위 제 2 신청인은 위 시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시위가 있다고 해서 그의 경영체총회의 지도력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아니하는 것이다. 위 보도는 이로써 경영체총회의 상장을 전체적으로 기술한 것도 아니고, 또한 제 2 신청인이 지휘하는 경영협의회의 성과에 대하여 기술한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위 찬성 및 반대의 시위는 위 제 2 신청인 자신이나, 그의 의사표시나 또는 그의 경영체총회의 지휘에는 전혀 관계되지 아니한 것이다. 노동자전원의 대표자는 경영협의회 자체이고 그 경영협의회의 의장은 아니므로, 함부르크 주 언론법 제 11 조의 의미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자」라 함은 어떤 경우든지 경영협의회이고, 위 협의회의 의장은 아니며, 위 기사는 반론권에 관한 규정 제 1 호 및 제 2 호에 규정된 의사표시에 관련해서만이 위 협의회의 의장의 출석 및 그의 경영체총회의 지체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 1 신청인은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있는 반론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다른 점에 있어서만(후술하는 문제점들을 제외한다면) 반론권이 있음이 분명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 반론문에는 제 2 신청인의 서명도 기재되어 있는 바, 법원은 위 서명을 무조건 삭제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 밖에도 본 재판부의 견해로는, 제 1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 50 조의 의미에 있어서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설 및 판례의 통일된 견해에 의하면 경영협의회는 당사자 능력이 없고 또한 특히 법인도 아닌 것이다.(Dietz-Richardi, 경영체규칙법 Bd. 1,6, Auflage 참조) 그리고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도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것이다. (Stein-Jonas, ZPO 20. Aufl. §50 Anm.16, LAG Baden Württemberg in BB64/963 zu mit stimmender Anmerkung von Camper in BB 64/964 unter Hinweis auf Galperin/Siebert, Kommentar zum Betriebsverfassungsgesetz 4. Aufl. vor Bemerkung 7 zu §21 : ebenso in 5. Aufl. vor §1 Anm.53 참조). 위 경영협의회가, 경영체조직의 범위 안에 있어서는 기업의 노동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문제된 기사에 의하여 침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에 의하여도 위 경영협의회는 민사소송법 제 50 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당사자 능력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함부르크 주 언론법 제 11 조에 있어서의 「개인」 및 「기관」의 개념은 당사자 능력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KG in NJW 71/947 참조) 이러한 당사자 능력에 대하여는 오히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 50 조가 적용되는 것이다. 위 규정에 의하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만이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영협의회는 법인이 아닌 것이다. 위협의회는 고유의 권리인격체가 아니므로, 따라서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위 협의회는 급부소송에 있어서 결코 피고로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독일 민사소송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영협의회는 노동자 전원의 단순한 대리 또는 대표기관으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동일시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LAG Baden-Württemberg a. a. o 참조) 어떤 특정의 경영체규칙

법상의 사건에 있어서 제 1 신청인이 관여할 자격이 있고 또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로 인해서 위와 같은 사정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아니한다(SteinJonas a.a.O. §50Anm.44 참조) 다른 절차법에 있어서의 규정은 반론권 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는 준용되지 않는 것이다.(Seitz, Schmidt, Schöner, Das Gegendarstellungsrecht in Presse, Film, Funk und Fernsehen 1980, Randnote 347 unter ausdrücklichem Hinweis auf die §10, 112 Arbeitsgerichtsgesetz; §§ 63, 71, 73 Betriebsverfahrensgesetz 참조) 따라서 제 2 신청인 자신의 서명에 의하여 반론권의 하자가 없어진다면, 제 1 신청인은 경영협의회의 모든 구성원을 신청인으로서 본건 절차에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법원의 견해로는 이 경우에는 오직 당사자표시의 정정만이 문제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론권 자체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하자때문에 제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서 새로운 반론권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 1 신청인은 그 반론문이 경영협의회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서 서명 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경영체규칙법 제 26 조 제 3 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의 서명형태로써도 충분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당 법원은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영협의회의 의장은 경영협의회의 임의대리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이다.